

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 정책과 시사점

Policies to Support Young Carers in the UK

이봉조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초빙부연구위원)
Yi, Bongjo (Seoul Institute)

이 글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한 뒤, 영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영 케어러 관련 정책과 학술적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케어러의 규모는 부정확하고 과소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령이나 노동 및 교육 참여 시간을 규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경제적 박탈과 빈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과 비교해 개인의 안녕, 정신·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문제를 겪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 영국 영 케어러 정책의 맹점은 한국의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이다.

1. 들어가며

적절한 수준의 보건과 사회적 돌봄 지원이 부족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이 가정 내에서 장시간 돌봄노동을 수행하면, 불완전한 안녕(*wellbeing*), 건강, 정신적·사회적 발달과 열악한 교육 참여 수준 및 수행력, 제한된 교우관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행 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Becker, Dearden, & Aldridge, 2000, p. 2)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은 엄연히 하나의 노

동이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단순 집안일로 여겨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회적·정책적 측면에서 무임금 노동(unpaid work)으로 분류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무임금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비공식적 돌봄노동자(informal carer)¹⁾로 정의하며, 이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일 정도로 많은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20/21년의 가족 자원 조사(FRS: Family Resources Survey)에서는 약 420만 명의 종사자-영국 인구의 약 6%-가 무임금 돌봄노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Foley et al., 2022). 영국 전역에서 대표 가구 4만 3,756가구의 소득, 점유 형태, 돌봄의 필요성 및 책임 등 총 11가지 항목을 조사한 FRS에서 조사 가구 중 2만 1,254가구가 무임금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종사자의 연령 기준으로는 0~15세가 3,463가구, 16~24세가 1,45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청소년이 무임금 돌봄노동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청소년 돌봄노동자(이하, '영 케어러'로 통일하여 작성함)의 행위를 단순히 자녀로서 혹은 형제자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소한 집안일로 여기기에는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Sprung & Laing, 2017). Becker et al.(2000)은 영 케어러의 활동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적절하지 못한 수준의 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돌봄 지원, 불충분한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오면서 파킨슨병, 정신건강 문제, 다발성경화증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부모를 돌보는 아동·청소년의 경험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가 확대되었다(Becker et al., 2000). 이러한 인식의 확대는 1992년부터 법적 기금을 지원받은 제3섹터(voluntary sector)를 중심으로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제3섹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 케어러는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적절한 수준의 보건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들이 속한 가정 대부분은 소득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영 케어러가 우리의 시선에서 숨겨진 채 가정 내에 존재하기 때

1) '케어러(carer)'는 그 자체로 간병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동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자'로 표현하며, 아동·청소년 돌봄노동자는 '영 케어러(young carers)'로 표현한다.

문이다(Hounsell, 2013).

이 글의 목적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영국 사회 내에서 발견되는 정책의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영 케어러에 대한 선진적 정책을 펼쳐 왔던 영국 사회 내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가 영 케어러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를 마련해 갈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영국 영 케어러의 정의와 특징

가.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

영국에서는 영 케어러를 2014년 아동과 가족법 제96조 영 케어러(¹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Section 96(Young Carers))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표 1). 해당 법에서 영 케어러는 만 18세 미만으로서 다른 사람(another person)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향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란 같은 가족 내 구성원을 가리킨다. 물론 영국에서 정의하는 영 케어러의 법적 연령은 아동(children), 청소년(adolescent)을 포함하여 청년(youth 또는 young adults)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연구에서처럼 논의의 대상이 된다(Aldridge, 2018). 성인이행기 생애과업(transitions toward adulthood)이 복잡해지고 그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ldridge(2018)는 그럼에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영 케어러의 요구(needs)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표 1. 잉글랜드의 영 케어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제96조, 17ZA(영 케어러의 요구 평가: 잉글랜드)

- (1) 영 케어러의 정의
 - 다른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향이 있는 만 18세 미만인 자
- (2) 영 케어러 요구 평가(needs assessments)를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와 역할
 - 영 케어러가 교육, 훈련,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정도
 - 영 케어러가 일하거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정도에 대한 요구 평가
- (3) 돌봄노동자가 아닌 경우
 - 계약상 혹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봉사 활동
- (4) 돌봄노동자의 서비스
 - 돌봄의 범위에 실질적이거나 감정적인 지원(practical or emotional support)을 포함

자료: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contents/enacted>

법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영 케어러 돌봄의 범위

〈표 1〉의 법에서는 돌봄의 범위를 ‘실질적이거나 감정적인 지원(practical or emotional support)’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Dearden and Becker (2004)의 보고서에서는 가정 내 돌봄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표 2). 비록 각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가정의 주요 소득을 담당하는 비중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미 국제적 비교 연구에서는 영 케어러의 업무 종류와 수준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Joseph, Sempik, Leu, & Becker, 2020).

연구에서 제시하는 돌봄노동의 종류가 일상적인 측면의 집안일 수준 즉, 부모를 도와 일부를 담당하는 수준-이라면 아동·청소년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역할을 장기간 요구한다면 그들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영 케어러의 대부분은 생애과업상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성취가 낮거나 그 자체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Hounsell(2013)의 보고서에서는 돌봄노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또래들보다 낮다고 보았다.

요리, 청소, 빨래나 다림질 같은 집안일은 매일 장시간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충분한 휴식이나 학교 과제 등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시간에 맞춰 약을

표 2. 영 케어러의 가정 내 돌봄의 범위와 예시

돌봄 범위	예시
집안일	요리, 청소, 빨래, 다림질 등
일반적인 돌봄	시간에 맞춰 약 제공, 옷 갈아입히기, 이동 도움 등
감정적 지원	환자 보호(supervision), 환자가 우울할 때 격려하는 행위 등
사적인 돌봄	씻기, 옷 입히기 및 화장실 관련 도움
아이 돌봄	어린 형제자매 돌보기
기타	가계 활동, 공과금 납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한 통역 및 병원 동행 등

자료: 1) Dearden, C., & Becker, S. (2004). Young carers in the UK: the 2004 report. p. 7.

2) Warrent, J. (2007). Young carers: Conventional or exaggerated levels of involvement in domestic and caring tasks? Children & Society, 21(2), 136-146.

제공하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의 이동을 돕는 행위는 아주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 소비될 것처럼 보이지만, 돌봄을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노동이 항상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안녕(wellbeing)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국 내 돌봄노동자 단체인 케어러즈 트러스트(Carers Trust)는 517명의 아동·청소년(young)과 청년(young adult)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보고서(2022)를 통해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0% 전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걱정, 두려움, 소외 등을 토로하기도 한다 (Dharampal & Ani, 2020; Rahmani, Roshanghar, Gholizadeh, & Dickens, 2022).

3. 영 케어러의 규모

가정 내에 숨겨져 있던 영 케어러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대해 온 영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아동·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무임금 돌봄노동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해 왔다. 양적 조사에서는 어떤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한 주당 몇 시간을 무임금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영 케어러를 향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영국에서는 인구총조사(census)에서 '무임금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관련 내용은 2001년과 2011년 인구총조사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

2022년 11월 1일 현재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영국 통계청 공식 자료인 2011년 인구총조사 결과 영국 전체에서 약 49만 1천 명에 달하는 24세 이하 영 케어러가 발견되었고, 이는 2001년 이래로 약 8만 7천 명이 증가한 수치임이 보고되었다(Foley et al., 2022). 영 케어러와 관련하여 구득 가능한 인구총조사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었는데, 두 지역에서만 0~24세 영 케어러가 약 44만 3천 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2011). 2001년 인구총조사에서도 영 케어러

2) 이 글에서 소개하는 영 케어러 관련 인구총조사 자료는 속성별 구분이 상이함을 밝힌다. 따라서 인구총조사(2001, 2011)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추가로 활용한다.

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있으나, 연령별 카테고리를 0~15세(9만 7,362명, 0.9%)와 16~34세(77만 4,669명, 6.1%)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영 케어러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ONS, 2001). 다만, 두 시기 동안 0~15세 영 케어러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만 1.2% 포인트 증가한 약 11만 9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비록 구득 가능한 영국의 2011년 인구총조사에서 법적 기준인 18세 미만 영 케어러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다른 연구를 통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영국의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Aldridge(2018)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18세 미만 돌봄노동자 규모를 약 16만 6천 명으로 확인하였다.³⁾

한편, 주당 무임금 돌봄노동 시간은 1시간 이상~19시간 이하인 경우가 0~15세는 80.8%(9만 6,102명)이며, 50시간 이상도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제공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영 케어러의 삶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당 50시간 이상을 돌봄노동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규 학교교육 참여 및 교우관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애과업상 중요한 경험들이 박탈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 무임금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비율은 16~24세 이하 연령대에서 더 확대된다. 한국과 같이 영국에서도 16세부터는 대학 입학 혹은 직업 탐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 연령대 무임금 돌봄노동자의 절대적 규모 증가와 장시간 노동의 비율 증가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 혹은 진출을 시작하는 시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표 3.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무임금 돌봄노동자 규모 및 주당 노동 시간(2011년)

주당 노동 시간	0~15세	16~24세	25~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1~19시간	96,102	235,228	318,461	974,190	1,422,761	618,330	3,665,072
20~49시간	11,953	51,526	78,642	212,712	256,692	163,664	775,189
50시간 이상	10,912	37,213	106,698	326,018	381,248	497,896	1,359,985
전체	118,967	323,967	503,801	1,512,920	2,060,701	1,279,890	5,800,246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Provision of unpaid care by age. Retrieved from <https://www.nomisweb.co.uk/census/2011/lc3304ew>

3) 그럼에도 그의 연구에서는 2010년 영국 전역을 조사한 영국 공영방송 BBC의 데이터(약 70만 명)를 함께 제시하여 인구총조사 데이터에서 영 케어러의 규모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한계

영국에서는 돌봄노동자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돌봄노동자 수당(Carer's Allowance)을 제공한다. 돌봄노동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당(qualifying benefits)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노동자 수당은 주급 69.70파운드(약 11만 4,650원, 1파운드 = 1,645원, 2022년 10월 30일 기준)를 매주 미리 받거나 4주마다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GOV.UK, 2022). 2021년 11월, 영국 전체에서 약 130만 명의 돌봄노동자가 수당을 신청하였고, 약 70%가 실제로 수당을 받았다(Foley et al., 2022). 비록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때 보조금 제한(benefit cap)에 의해 그 금액이 제한되긴 하지만, 풀타임으로 노동시장에 종사할 수 없는 가구에는 매우 중요한 수당이다.

문제는 영국의 돌봄노동자 수당은 가정 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사실상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표 4>는 영국의 구체적인 돌봄노동자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첫째, 연령 기준이 16세 이상이다.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 18세 미만임을 감안한다면, 16세 이상부터 돌봄노동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정책을 설계했다는 것은 2011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최소 약 11만 9천 명의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문적인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애주기상 제도권 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생애주기상 만 16세 이상은 대학교육 혹은 직업교육을 받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 주 35시간의 노동 시간은 주말 업무를 포함하더라도 매일 5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다. 풀타임 교육을 받고 있

표 4. 돌봄노동자 수당 지급 기준

-
- 16세 이상
 -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돌봄노동에 종사할 것
 - 풀타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주당 21시간 혹은 그 이상 교육받고 있지 않을 것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2년은 거주한 경우
 - 일반적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스에 살고 있거나 해외 파병자로서 해외에 살고 있을 것(유럽과 스위스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이미 살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
 - 출입국 통제 대상이 아닐 것
 - 주당 세후 132파운드(약 21만 7,140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 경우
-

자료: GOV.UK (2022). Retrieved from <https://www.gov.uk//carers-allowance>

지 않고, 한 주 21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결국 만 16세, 17세 청소년 돌봄노동자도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1년 11월 돌봄노동자 수당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3,682명에 불과했다(Foley et al., 2022).

영국 정부의 돌봄노동자 수당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스코틀랜드에서는 영 케어러 수당(Young Carer Grant: YCG)을 2019년 10월부터 도입하였다(표 5). 돌봄 노동을 하는 16~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돌봄노동자 수당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다. YCG는 주당 16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청소년의 상황을 인정해 주고 있다. 예컨대 일주일 내내 하루에 2시간을 약간 초과하여 돌봄노동을 하는 경우나 온전히 학교교육을 받는 시간을 기준으로 2일 이상 돌봄노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⁴⁾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 케어러 수당을 통해 매년 약 1,700명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5,280명이 연간 326.65파운드(약 53만 7,340원) 정도를 받았다고 밝혔다(Foley et al., 2022).

표 5. 스코틀랜드의 영 케어러 수당 지급 기준

-
- 가족, 친구, 이웃을 돌보는 만 16세 이상~만 18세 이하
 - 주당 16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을 돌봄노동에 종사하거나, 지난 3개월 동안 돌봄노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난 3개월 동안 주당 16시간 정도의 시간을 1명 이상의 돌봄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것
 - 돌봄 수혜자가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을 것
 - 수당을 받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다른 종류의 돌봄노동자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자료: Mygov.scot(2022). Retrieved from <https://www.mygov.scot/young-carer-grant>

5. 결론 및 제언

영국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수당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비공식적 돌봄노동자는 전문적인 돌봄노동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문제는 돌봄노동 역할 자체가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아동·청소년이 노동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논란의 소지가 있

4) 영국의 정규교육 학업시간(full school day)은 주당 약 32.5시간을 의미하며, 대개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약 6시간 30분)를 말한다.

다. 다만 그 노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돌봄 활동은 단순한 심부름 수준의 집안일이 아니며,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상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내 교우관계와 학업 참여, 학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저소득, 실업을 경험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영 케어러의 노동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되기 어렵다. 오랫동안 영 케어러에 관심을 쏟아 왔던 영국에서도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취약한 아동 인구(vulnerable children population) 내에서 특수한 사회적 그룹인 영 케어러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영국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 케어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영국은 2001년, 2011년 인구총조사를 통해 돌봄노동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연구나 미디어로부터 인구총조사의 영 케어러 규모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돌봄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이다(Aldridge, 2018). 가족 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오명(stigma)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지만, 돌봄노동이 현재 혹은 미래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돌봄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하고 사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법적 측면에서 무임금 돌봄노동자의 개념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칠드런즈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Society)에서는 영 케어러로서의 삶이 만 5세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영국처럼 단순히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불확실한 성인이행기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영 케어러의 법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교육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 시장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 케어러는 상당한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지역 내 영 케어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시설 등과 연계된 시스

템화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이때, 앞의 첫째 고려 사항에서 지목된 문제의 원인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사회적 오명에 대한 두려움이 영 케어러를 정책과 제도에 포섭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 혹은 최소한 영 케어러와 직접 만나는 또래나 성인의 깊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모 외 교사, 사회적 활동가, 의사 등과의 만남을 통해 영 케어러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James, 2017). 예컨대 집 밖에서 아동·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는 주요 시설인 학교는 영 케어러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일상생활 속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굴되는 영 케어러는 그들이 원한다면 그 사실이 또래집단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또 학교, 병원, 아동복지서비스센터 등과 연계된 지원 조직 역시 영 케어러의 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물질적·심리적·실질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⁵⁾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행위는 한 사회의 보건 정책과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일상생활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을 당연한 희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해당 가족 구성원은 경제적·사회적 박탈이나 빈곤을 장기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영국이 영 케어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학술적 측면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일 수는 있으나(Leu & Becker, 2017), 이를 단순히 모범 사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오히려 영국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보다 먼저 영 케어러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의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본격적인 영 케어러 논의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적 어려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 Aldridge, J. (2018). Where are we now?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n young carers. *Critical Social Policy*, 38(1), 155-165. doi:10.1177/0261018317724525
- Becker, S., Dearden, C., & Aldridge, J. (2000). Young carers in the UK: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Research Policy and Planning*, 18(2), 13-22.
- Carers Trust. (2022). *It's harder than anyone understands: The experiences and thoughts of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Retrieved from [https://carers.org/downloads/what-we-do-section/ycad-2022/its-harder-than-anyone-understands-\(english-version\).pdf](https://carers.org/downloads/what-we-do-section/ycad-2022/its-harder-than-anyone-understands-(english-version).pdf)
-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Available at: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contents/enacted> (Accessed: 2020. 9. 14.)
- Dearden, C., & Becker, S. (2004). *Young carers in the UK: the 2004 report*. London: Carers UK.
- Dharampal, R., & Ani, C. (2020). The emotional and mental health needs of young carers: What psychiatry can do. *BJPsych bulletin*, 44(3), 112-120. doi:10.1192/bjb.2019.78
- Foley, N., Powell, A., Clark, H., Brione, P., Kennedy, S., Powell, T., ... & Foster, D. (2022). *Informal carers*. Retrieved from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7756/>
- GOV.UK. (n.d.) <https://www.gov.uk//carers-allowance> (Accessed: 2020. 9. 14.)
- Hounsell, D. (2013). *Hidden from view: The experiences of young carers in England*. London, United Kingdom: The Children's Society.
- James, E. (2017). *Still Hidden, Still Ignored*. Retrieved from <https://www.barnardos.org.uk/sites/default/files/uploads/still-hidden-still-ignored.pdf>
- Joseph, S., Sempik, J., Leu, A., & Becker, S. (2020).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1), 77-89. doi:10.1007/s40894-019-00119-9
- Leu, A., & Becker, S. (2017). A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750-762. doi:10.1080/13676261.2016.1260698
- Lewis, F. M., Becker, S., Parkhouse, T., Joseph, S., Hlebec, V., Mrzel, M., ... & Hanson, E. (2022). The first cross-national study of adolescent young carers aged 15-17 in six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1, 1-28. doi:10.1332/239788222X16455943560342
- Mygov.scot. (n.d.) Available at: <https://www.mygov.scot/young-carer-grant> (Accessed: 2020. 10. 1).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2001). *Sex and age by general health and provision of unpaid care*. Retrieved from <https://www.nomisweb.co.uk/datasets/cs025>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Provision of unpaid care by age*. Retrieved from <https://www.nomisweb.co.uk/census/2011/lc3304ew>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2). *Family Resources Survey: financial year 2020 to 2021*.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family-resources-survey-financial-year-2020-to-2021>
- Rahmani, F., Roshanghar, F., Gholizadeh, L., & Dickens, G. L. (2022). Caregiver or care receiver: Adolescents' experience of caregiving to a parent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qualitative study. *Child & Family Social Work*. doi: 10.1111/cfs.12926
- Sprung, S., & Laing, M. (2017). Young carer awareness, identification and referral.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22(8), 398-406. doi:10.12968/bjcn.2017.22.8.398
- Warren, J. (2007). Young carers: Conventional or exaggerated levels of involvement in domestic and caring tasks? *Children & Society*, 21(2), 136-146. doi:10.1111/j.1099-0860.2006.00038.x